

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배포 일시 | 2022. 7. 12.(화) | | |
| 담당 부서 | 국토도시실 건축안전과 | 책임자 | 과 장 김연희 (044-201-4987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승진예정자 안홍구 (044-201-4988) |
| 보도일시 |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 | | |

건축자재 화재안전기준을 국민 안전기대 수준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.

< 보도내용('22. 7. 12. 한겨레) >

◆ 건축자재 화재안전기준 ‘뒷걸음질’

- 이미 개정된 시험방법과 기준을 완화해 가연성 심재(우레탄, 스티로폼 등)가 1년간 더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, 난연성능 시험 시 용융·수준 기준도 완화
- 업계에서 품질인정제도 철회 및 유예를 주장, 국토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안전기준 보다 후퇴한 정책을 발표

< 화재안전기준 개요 >

-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‘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’를 ’21.12.23.부터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.
 - ‘품질인정제도’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품질인정기관(한국건설기술연구원)을 통해 인정을 받고, 인정 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·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·품질을 관리하는 제도이며,
 - 현재 내화구조, 방화문, 방화셔터, 내화채움구조, 샌드위치 패널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.
- 또한, 품질인정제 도입과 함께 샌드위치 패널과 복합 외벽마감재료에 대해서는 실제와 유사하게 시험체를 제작하고, 화염에 노출시켜 화재안전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‘실물모형시험’을 ’22.2.11.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

< 보도내용 관련 >

① 기존 자재 사용은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위한 경과규정입니다.

- 새로운 제도를 도입·시행함에 있어 기존 제도를 통해 성능확인을 받은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, 해당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토록 경과규정을 두었으며,
- 이는 개정된 시험방법과 기준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,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완성된 행정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② 표준모델은 강화된 기준으로 인한 시장혼란 최소화, 제도 안착 및 건축 자재 수급 안정 등을 고려한 사항입니다.

- 샌드위치 패널 및 복합 외벽마감재료 업계가 희망하는 경우, 협회를 통해 표준화된 제품사양(구성재료, 규격 등)을 품질인정기관(한국건설기술연구원)에 제출이 가능하며, 품질인정기관은 실물모형시험 등 성능평가를 통해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한 품질을 갖춘 경우에 고시할 예정으로,
- 고시된 표준모델에 맞게 제작(동일한 재료, 규격 등)된 경우에는 별도의 성능평가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, 표준모델과 다르게 제작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성능평가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.

③ 난연성능 시험의 용융·수축 기준은 개정은, 기존 기준의 불합리를 개선 하고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입니다.

- 개정 전 난연성능 시험 시 용융·수축 기준은 객관적 지표가 없어 시험 기관의 재량에 따라 판정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으며,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이는 개정 전 보다 기준이 강화된 내용입니다.

* (개정 전) 심재의 일부 용융 및 수축(시험체의 심재가 녹거나 줄어들어 시험체 바닥면의 강판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)

(현행) 시험체 두께의 20%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

< 향후 추진계획 >

- 국토교통부는 불법자재 유통을 차단하고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강화 등을 위해 매년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*을 추진 중에 있으며, 건축공사 현장 등을 점검하여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가 유통, 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.

*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정·고시

- 또한, 국토교통부는 품질인정제 등 건축자재 화재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.

